

직원인사위원회규정

제정 2017. 7.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직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본 규정에서 ‘직원’이라 함은 일반직, 기술직, 무기계약직, 계약직을 말한다.

제3조(조직) ① 인사위원회는 7인 이하의 인원으로 구성하며 직원인사담당 부서장이 위원장이 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직원인사담당 부서장의 추천에 의해 총장이 임명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4조(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원인사규정 제20조의2(성과향상)에 관한 사항
2. 직원인사규정 제20조의3(신분변동)에 관한 사항
3. 직원 상벌에 관한 사항
4.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간사) 인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둔다.

제6조(회의) 인사위원회의 소집은 총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7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인사위원회의 개최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8조(회의의 비밀유지)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참석등 위원회와 관련된 활동으로 인하여 지득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운영)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의 서명 날인을 받아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